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6 선고 2022가단131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 가. 피고가 2017. 12. 15.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5. 8. 접수 제8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별지2 기재와 같다(청구취지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룬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이후 2023. 4. 11.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습니다’라는 형식적 내용만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강영선

별지1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남 거창군 D 대 74㎡
2. 경남 거창군 D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7평. 끝.

별지2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사이의 2017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소외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8. 05. 08. 접수 제8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2/5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가. 소외 E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소외 C와 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후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규약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외회사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소외 C는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연중 원리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므로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채무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02539 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299,650원과 그 중 4,836,854원에 대하여 2014.04.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지위 및 채권의 양도

- 소외 E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각 순차적으로 채권을 양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소외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 하였습니다.

- 아 래 -

E 주식회사 => F 유한회사 => G 주식회사 => H
주식회사 => 유한회사 I => J 주식회사 => 주식회사 A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 추정

가. 피고 B와 소외 C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분할상속은 2017년경 등기원인에 의해 2018. 05. 08.에 등기가 되었고 원고는 소외 C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던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민법 제 460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소외 C는 일반 재산이었던 그의 부친 소외 K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그의 모친인 피고 B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에 빠졌습니다.

다. 소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라. 피고 B이 본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중 소외 C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고, 이를 피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외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피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악의가 추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 C와 피고 B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악의는 반복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상속협의분할의 방법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 29119판결)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02539 결정에 따른 청구 채권에 터잡아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L C 서울중앙 2014가소5002539

첨 부 서 류

1. A 법인등기10-11
2. A -대부업등록증
3. C B 소가계산표
4. 별지-C B -건물,토지
5. L 초본-C -2022-12-01
6.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7. 부동산등기

2022.12.08

원고 주식회사 A

M

